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749
----------	------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5일

발 의 자 : 유 청, 김정자(강서), 이상목, 김창원,  
송재형, 이해경, 박마루, 장우윤,  
장홍순, 이순자, 김진철, 장인홍,  
이승로, 유동균, 오경환, 강성언,  
최영수, 김광수(도봉), 이윤희, 맹진영,  
김동울 의원(21명)

## 1. 주 문

- 서울시의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제외하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을 복수적·병렬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함. 또한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정적 부담은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권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함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저소득층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이 수령하는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을 실제소득으로 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는 바, 노인 빈곤을 극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함.
-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복지수급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제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 알리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 나. 기타사항 :

### **4. 이 송 처**

-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

- 노인세대는 청장년 시절 동안 대한민국을 세계무역순위 9위의 반열에 오르게 한 세대이지만, 노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복지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빈곤, 무위, 질병, 고독이라는 4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바, 노인 2명 중 1명이 전체 노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70세 이상 노인 10만 명 당 116.2명이 자살로 사망한 바, 최소 5.8명에서 최대 42.3명인 다른 나라의 노인 자살률에 비해 최대 20배 높은 상황이며, 2014년 기준 서울시 노인 자살률도 10만 명당 48.4명에 이르고 있다.
-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저소득층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이 수령하는 수급액 산정시 기초연금액을 실제소득으로 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다.
- 이에 기초연금제도의 노인 빈곤을 극복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 촉구한다.
- 또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복지수급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제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 0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